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7
----------	-------

발의년월일 : 2019. 5.

발의자 : 채우진, 권영숙, 김영미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정혜경, 최은하, 한일용

1. 개정이유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돋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따른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항)

나.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4항)

-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1인당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 (안 제4조제2항)

-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일 경우의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3항)
- 출산축하금 중복지급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제4항)

다.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라.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에 보호자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에 해당 또는 미해당 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의 확인 사항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사항 : 모 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추가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라.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중 “신생아와 관계”, “부 또는 모 등록장애인여부”를 추가함
(안 별지 제2호서식)

3.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등

-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5. . ~ 2019. 5. .

나.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 15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150만원

3.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③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한다.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등록장애인” 이란 「장애 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생 략) <u><신 설></u>	제4조(지급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축 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 15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150만원 3.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③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에서
<u><신 설></u>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한다.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제5조 관련)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년 월 일
	모		생년월일	년 월 일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

확인 사항	○ 신생아 성명 : _____
	○ 신생아 생년월일 : _____년_____월_____일
	○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 _____년_____월_____일 ~ _____년_____월_____일

제6조(지급절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인 여부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제5조 관련)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자	모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

확인 사항	○ 신생아 성명 : _____
	○ 신생아 생년월일 : _____년_____월_____일
	○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 _____년_____월_____일 ~ _____년_____월_____일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사항 :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
(제8조 관련)

연번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
(제8조 관련)

연번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 월일	신생아와 관계	부 또는 모 등록장애인부	주 소 (전화 번호)